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9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20. 12. 10

판결 선고 2021. 1.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7. 1. 접수 제278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B와 아래 기재와 같이 신용 보증약정 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 보증하에주식회사 D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보증내역>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E	170,000,000	2013. 6. 21.	2020. 6. 21.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D은행 사상금융센터
2	F	53,550,000	2017. 7. 26.	2019. 7. 25.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덕천동지점

<대출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170,000,000	D은행 사상금융센터	2013. 6. 21.	200,000,000
2	F	53,550,000	중소기업은행 덕천동지점	2017. 7. 26.	63,000,000

나. 그런데 B은 위대출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2019. 8. 26. 경신용 보증사고 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D및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아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및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금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원)	이 자(원)	구상금합계(원)
1	E	2020. 1. 23.	130,260,309	1,792,832	132,053,141
2	F	2019. 11. 21.	48,450,000	926,016	49,376,016
합계			178,710,309	2,718,848	181,429,157

다. B은 2013. 12. 31.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12. 31.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에게 채권 최고액 2억 2, 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위조합으로부터대출을 받았고 2019. 7. 1. 현재위 조합에 대한 채무액은 1억 9, 800만원이다.

B은2019. 7. 1. 피고에게 같은 날짜근저당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법률 행위"라고 한다)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 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법률 행위 당시 B은 원고를 비롯하여, G조합, H주식회사, I주식회사, J주식회사, K단체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기재,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금융거래정보명령,양산시장,부산광역시장에대한각과세정보제출명령,L에대한신용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 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 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재산이 아니라 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판결 등 참조).

나.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중 하나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하여 한이 사건법률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법률 행위는 취소되어야하고 원상회복으로 그에 기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2015년 경부터 외상 거래를 하였고 2019. 6. 경당시 B에 대하여30, 446, 394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그에 따라 B으로부터 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법률 행위 당시 B이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윤원묵

별지